

|  |   |  |
|--|---|--|
| <p>제2022-100호<br/>2022년 10월 13일(목)</p> | <p><b>시</b>  <b>보</b></p> <p>여수시</p> | <p><b>시 정 지 표</b></p> <p>소통화합 열린도시<br/>인재육성 산업도시<br/>문화예술 복지도시<br/>해양관광 휴양도시<br/>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42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2-430호 여수시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2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725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22-2726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4
- 여수시 공고 제2022-2729호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
- 여수시 공고 제2022-2730호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2-2731호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2-2741호 공인 등록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2-2741호) 20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2 - 42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 점용·사용<br>(승인)번호<br>(허가(승인)일) | 준공검사 신청자                  |               | 점용·사용 장소             | 면적(㎡) | 준공검사<br>확 인 증<br>교부일자 | 공사내용                      |
|------------------------------|---------------------------|---------------|----------------------|-------|-----------------------|---------------------------|
|                              | 주 소                       | 성 명           |                      |       |                       |                           |
| 2022-26<br>(‘22. 7. 6.)      | 전라남도 여수시<br>시청로 1<br>(학동) | 여수시장<br>(공원과) | 여수시 웅천동<br>1902번지 일원 | 62.9  | ‘22. 10. 11.          | 웅천 장도공원<br>해안데크로드<br>조성사업 |

2022. 10. 11.

여 수 시 장

## 여수시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 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돌산읍 금성리 321번지 일원 863필지/385,860.0㎡  
돌산읍 군내리 132-1번지 일원 1,353필지/485,208.9㎡  
돌산읍 죽포리 62-5번지 일원 989필지/311,524.0㎡  
상암동 456번지 일원 829필지/461,797.0㎡
3. 공고기간 : 2022. 10. 12.~2022. 11. 11.(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시 행 자 : 여 수 시 장
5.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2년)
6. 사 업 비 : 785백만원(전액국비)
7. 관계서류 열람 장소
  -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 나. 열람장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8. 제출방법 : 방문, 팩스 061) 659 - 5913, 우편
  - 가. 우편)59675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9. 기타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0 ~ 3332, 3340, 3474, 34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체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의2 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업체

| 상 호<br>(대표자)            | 해당업종                    | 영업소재지                           | 소명자료<br>제출내용          | 관련법  |
|-------------------------|-------------------------|---------------------------------|-----------------------|--|
| 남도엔지니어링<br>(주)<br>(남종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br>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여수시 만성로<br>151<br>가동2호<br>(미평동) | 보증가능금액실효<br>에 따른 소명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br>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br>제1항 1의2 |

2. 공고 기간 : 2022. 10. 11. ~ 10. 25. (14일간)

3. 자료제출기간 및 제출 처 : 2022. 10. 11. ~ 10. 25. (14일간)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소명 자료제출목록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5.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광역시제외)홈페이지 및 게시판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6. 기 타

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2022. 10. 25.까지 우리 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여 수 시 장

##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태랑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시청로 222-18(여천동)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8\*\*\*\*

| 업종명       | 등록번호       | 주력분야     | 등록일           |
|-----------|------------|----------|---------------|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여수-22-파-18 | • 기계설비공사 | 2022. 10. 11. |

2022년 10월 11일

여 수 시 장

## 공 고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업인 단체 및 지역주민 등을 추가 위촉해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전) 15명 이내의 위원 → (개정 후)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

### 3. 입법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 4.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 5. 의견제출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지역경제과

###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 E-Mail : sirius4h@korea.kr
- 전 화 : 061-659-3611
- F A X : 061-659-5816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반여부 |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
|            | 찬성   | 반대 |        |         |
|            |      |    |        |         |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협회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p>제8조(협회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권역별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p> |

#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 여 수 시 장

### 1. 수출상담회 개요

- 행사명 :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해외시장진출설명회」
- 기간 : '22. 10. 28.(금) 14:00 ~ 15:00
-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국제관 C동 세미나실 3
- 신청대상 : 설명회 참가희망 전남·여수지역 중소기업
- 주최 : 전라남도, 여수시
- 주관 :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미국, 베트남) 진출관련 설명회

### 《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 기간/장소 : '22. 10. 27.(목)~10. 30.(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
- 규모 : 1,000여명(World-OKTA 회장단 및 회원 등)
- 주최/주관 : 여수시, 전라남도/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연합뉴스
- 주요행사 : 중소기업 수출상담, 투자유치환경 설명회, Trade Show,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상임집행위원회, 통상위원회 임원, 확대 회장단 회의 등

## 2. 해외시장 진출설명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10. 12.(수) ~ 10. 21.(금)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문접수 :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 우편접수 :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우) 59675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가능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이메일 : [smy486@korea.kr](mailto:smy486@korea.kr)

- 팩 스 : 061-659-5816

\* 이메일 및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061-659-3605)으로 접수 확인 필수

○ 필요서류 : 참가신청서 1부

3. 문 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061-659-3605)

## 공 고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개정·시행에 따라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보호 의무(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 보호를 위한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지원 방법, 신청 및 결정 등 절차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별 첨

###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민원지적과장)

- 전 화 : 061-659-3313 팩스 : 061-659-5810

- 이 메 일 : cielange@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우편, 직접방문, 이메일(E-Mail)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사유) | 기타 참고사항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제6조 관련)

| 지 원 구 분                   | 근 거    | 지 원 한 도              | 세 부 기 준   |
|---------------------------|--------|----------------------|---|
| 심리상담                      | 제6조제1호 | 상담 치료 연계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
| 의 료 비                     | 제6조제2호 | 연 100만원 범위 내         | 1.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br>2. 약제비                                    |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 제6조제3호 | 2시간                  | 휴식시간 공가 처리<br>※ 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을 소속 부서장 판단 하에 연장 가능 |
|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 지원         | 제6조제4호 | 상담 연계 및 소송 지원        | 민원담당공무원 법률 상담 서비스 연계 등  |
| 예방과 치유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 제6조제5호 |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예산의 범위 내 | -   |
| 그 밖의 사업                   | 제6조제6호 | 예산의 범위 내             | 필 요 시   |
| 안전시설 확충                   | 제7조    | 예산의 범위 내             | -   |



###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6조에 의거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 여 수 시 장

- 1. 등 록 일 : 2022. 10. 12. (수)
- 2. 등록사유 : 고향사랑기금 신설
- 3. 등록내역

| 구분<br>(관리번호) | 공 인 명            | 등록인영  | 관리부서<br>(보고자) | 사용일         |
|--------------|------------------|---|---------------|-------------|
| 2208         | 여수시고향사랑기금운<br>용관 |   | 징수과           | 22. 10. 12. |
| 2209         | 여수시고향사랑기금출<br>납원 |  | 징수과           | 22. 10. 12. |